

Client Alert

February 2020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를 참고하여
연락주시십시오:

Kherk Ying Chew
Partner
+603 2298 7933
kherkying.chew@wongpartners.com

Brian Chia
Partner
+603 2298 7999
brian.chia@wongpartners.com

Stephanie Phua
Partner
+603 2298 7895
stephanie.phua@wongpartners.com

Eddie Chuah
Partner
+603 2298 7939
eddie.chuah@wongpartners.com

Chong Ker Ling
Associate
+603 2299 6503
kerling.chong@wongpartners.com

기 소 예
부장, 한국기업지원
+603 2298 7903
soyeh.ki@wongpartners.com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가 계약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의 여파로 글로벌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그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큼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은 관광, 리테일, 제조업, 기술 등 주요 산업들에 여러 방면으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기업들 및 다국적 기업들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여러 각도로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여파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부 계약들은 현재 "상업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본 자료는 기업들이 많이 문의하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말레이시아 법을 근거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계약의 이행이 영향을 받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2.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계약의 이행이 어려울 때,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구제 방안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가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다음과 같은 사안들은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행사들의 개최를 금지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 / 규제 / 법
- 계약된 행사의 미진행 혹은 취소
- 계약서에 참작된 사항과는 상업적으로 혹은 근본적으로 다른 상당한 지연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맺은 후 발생한 변경된 상황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 계약은 "이행불능 (frustrated)"이라고 말합니다. 변경된 상황은 "이행불능 상황 (frustrating event)" 으로 불립니다. 이행불능을 주장하고자 하는 계약 당사자는 이행불능 상황을 잘 밝혀내야 합니다. 즉, 계약 당사자 한 측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이행불능 상황이 초래했다거나, 이행불능 상황은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등이 방어할 수 있는 주장들입니다. 그러나, "상업적 불가능 (Commercial impossibility)"은 이행불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 (Force Majeure)

잘 작성된 상업 계약서에는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때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구제 방안을 규정하는 "불가항력 (force majeure)"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에 소개한 몇 가지 경우를 비롯한 만일의 사태 시 계약 조건이 명확하다면 계약서의 불가항력 조항이 시행됩니다.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및 구제 방안

불가항력 조항이 발동되면, 일반적인 구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적 의무 유예



- 미이행 혹은 지연으로 인한 책임에서 면제
- 계약의 해지

불가항력 상황으로 초래된 손실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각자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가항력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계약 이행불능 상황이 적용되면, 이행불능 상황으로 인하여 이행불능 계약은 무효라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의 이행에서 면제됩니다. 이후 법원은 계약서가 이행불능되기 이전 계약 당사자들간에 지급된 / 지급해야 할 금액의 배상, 한 당사자에게 전달된 혜택의 배상 및 비용 청구를 비롯한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법적 책임의 분배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습니다.

기업이 취할 조치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 계약서들을 검토하여 불가항력 조항의 여부를 확인하고, 현 상황에 의존할 수 있는 조항인지 혹은 기타 관련 조항의 여부를 확인
-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하기 위한 제한 조건 및 타임라인이 있는지 여부 확인
- 계약서에 경감 사유가 있는지 여부 고려
-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라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조항을 전략적으로 작성하여 포함
- 계약 당사자들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윈-윈" 상황으로 협상할 여지를 고심

www.wongpartners.com

Wong & Partners
Level 21
The Gardens South Tower
Mid Valley City
Lingkaran Syed Putra
59200 Kuala Lumpur

계약적 관계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가 초래할 법적 결과는 계약서의 종류, 계약된 의무의 종류, 의무가 이행되는 상황, 상황의 변동이 있을 가능성에 따라 다양하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솔루션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기업들은 계약서의 조항들과 적용 가능한 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자료는 영어로 쓰여진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자료이며, 가장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